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53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조승래 · 이광재 · 박용갑
박범계 · 장종태 · 이정문
정일영 · 이주희 · 서삼석
김준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매매·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호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호 중 “자동차”를 “상속 외의 사유로 자동차”로 한다.

제84조제5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 ----- -----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u>자동차</u>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 ----- <u>상속 외의 사유로 자동차</u> -----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u>
<u>2의2.</u> (생 략)	<u>2의3.</u>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